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조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알리안츠PIMCO토탈리턴증권자투자신탁(채권_재간접형)(H)
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채권_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

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1.06.22 - 2012.06.21

라. 집합투자업자: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(주)
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한화증권, 동양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미래에셋증권, 키움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, 비오에스증권, 한맥투자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우리은행, 대구은행, 외환은행, 기업은행, 한국씨티은행, 한국산업은행, 부산은행, 홍콩상하이은행, 신한은행, 미래에셋생명, 교보생명,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5.17	제 41 조(환매수수료)	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 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 종류 A 수익증권 -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10% 2. 종류 A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-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% - 30 일 이상 90 일 미만	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 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2012년 8월 14 일까지 환매청구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다만, 2012년 8월 16일부터 환매청구 시에는 별도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1. 종류 A 수익증권 -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10% 2. 종류 A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 -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%

		이익금의 30%	-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%
2012.05.17	제 49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제 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(이하 “수시공시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</p> <p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제 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(이하 “수시공시”라 한다)하여야 한다.</p> <p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</p>
2012.05.17	부칙	(신설)	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삼정회계법인	1년	110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